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832(2021.1.16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,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지자체별로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,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, 권역 내 타 지자체 및 중수본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람.

** 다만,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이 아닌 연말연시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람.

< 완화 불가한 조치 >

- ▶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- ▶ 파티룸 집합금지
- ▶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백화점·대형마트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- ▶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***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 :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” 참고

- 아 래 -

○ 적용기간 : '21.1.18(월) 0시 ~ '21.1.31(일) 24시

○ 대상지역 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·도)

* 지자체별 대상지역 조정 가능

3.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시·도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,

○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 부과로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,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,

○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

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2.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
3.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. 끝.
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경상남도지사(식품의약품과장), 경상북도지사(식품의약품과장), 전라남도지사(식품의약품과장), 부산광역시(보건
위생과장), 광주광역시(식품안전과장), 울산광역시(식품안전과장), 충청북도지사(식품안전과장), 충
청남도지사(건강증진식품과장), 전라북도지사(건강안전과장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보건건강위생과장), 세종
특별자치시장(보건정책과장), 경기도지사(식품안전과장), 대전광역시(식품안전과장), 대구광역시(위생
정책과장), 서울특별시(감염병관리과장), 인천광역시(위생정책과장), 강원도지사(보건위생정책과장),
(사)한국목욕업중앙회, (사)한국이용사회중앙회, (사)대한미용사회, (사)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, (사)대한숙
박업중앙회, (사)한국세탁업중앙회, (사)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, 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, (사)대한네일미
용업중앙회

주무관 김수영 행정사무관 김현정 건강정책과장 전결 2021. 1. 18.
최홍석

협조자

시행 건강정책과-444 (2021. 1. 18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10동 3층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858 팩스번호 044-202-3937 / yukson98@korea.kr / 비공개(5)